2023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학칙 제4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나. 학사운영규정 제103조(취득성적의 포기)

2. 취득성적의 포기

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**C+등급 이하의 경우 성적을 포기**할 수 있는 제도로서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초과 예정인 경우

3. 신청기간 : ~ 2023.09.08. 18:00 까지

4. 신청대상자 : 재학생 4학년 이상 (6학기 이수, 등록 7학기 이상)

5. 취득성적 포기신청

취득성적 포기신청은 재학생에 한하여 이수 일곱째 학기부터 6학점 이내로 매 학기 초에 신청할 수 있음. 졸업학기에는 성적 확인 후 10일 이내에 6학점 이내로 추가 포기신청 할 수 있음.

이수학기	시기	포기신청학점	비고
7학기	학기 초	6학점 이내	**1. 1회 신청 시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졸업까지 총 12학점 이내에서 가능** **2. 제출서류: 취득성적포기원, 서약서**
8학기	학기 초	6학점 이내	
	성적 확인 후 10일 이내	6학점 이내	

6. 주의사항

가. **교필** 및 **전필 교과목**은 **취득성적 포기 불가**

나. **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**

7. 신청방법(☏ 043-830-8584, MⅠ 411호)

홈페이지 학사공지 - 취득성적 포기원 및 서약서 서식 출력 → 작성 → 성적증명서 첨부 → 학과장 면담 및 날인 → 학생원스톱센터로 원본 제출